

변 경 대 비 표

■ 펀드명 : 하나 1Q 코스닥 150 채권혼합 5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 정정제출일 : 2026 년 08 월 27 일

■ 변경사유

- 설정·환매방식 변경(현금 → 현물 및 현금)

■ 신탁계약서 변경사항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조(용어의 정의)	설정·환매방식 변경	1.-9. (생략) 10. "납부금 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추가)을 말한다. 11.-12. (생략) 13.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추가)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4-17. (생략)	1.-9. (좌동) 10. "납부금 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한다. 11.-12. (좌동) 13.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 구성종목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4-17. (좌동)
제 24 조(납부금 등의 납입)	설정·환매방식 변경	①(생략)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추가)	①(좌동)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	③제 2 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평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 분의 115 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 1 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 1 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
--	--	--	---

		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투자자가 제 2 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지정참가회사가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 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7-2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제 5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	--	---	--

		<신설>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 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 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지정참가회사가 제 8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 1 호의 투자자의 납부금 등을 매매한 경우
--	--	-------------------	---

		<신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 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	⑩제 5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제 1 항 내지 제 10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 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⑫제 1 항 내지 제 1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	--	---	---

		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 일로부터 전·후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추가> <추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 일로부터 전·후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 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의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 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
--	--	---	---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제 5 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	부터 3 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 12 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
--	--	---	---

		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설정·환매방식 변경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 취소·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⑦ (생략) ⑧ 제 7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 취소·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⑦ (좌동) ⑧ 제 7 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1.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 (생략) <신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 (좌동) ⑩ 제 7 항 내지 제 9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에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	--	---	--

		⑩제 1 항 내지 제 9 항의 -(생략)-통지하여야 한다. ⑪제 10 항의 -(생략)-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⑫제 1 항 내지 제 1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추가>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⑪제 1 항 내지 제 10 항의 -(좌동)-통지하여야 한다. ⑫제 11 항의 -(좌동)-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⑬제 1 항 내지 제 1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 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3 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

		⑬제 12 항 -(생략)-각 호의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⑭제 13 항 -(좌동)-각 호의 접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1.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6 년 08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 투자설명서/ 일괄신고서 변경사항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설정·환매방식 변경	(2) 설정을 통한 매입 - 현금으로 설정합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또는 추가 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 등을 (추가)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신설>	(2) 설정을 통한 매입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또는 추가 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3) 상기 (2)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입(이하 “대납현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투자자로부터 동 정산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받아 정

		(3) (생략) <신설>	산)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지정 참가회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납현금 산출 : 설정청구일의 미 구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평가가액 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 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 분의 115 를 곱하여 산출 -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 율이 상기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 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 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동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 여야 함 -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의 수익의 반환 : 미구성자산을 매 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 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 을 지정참가회사에 반환하여 투자 자에게 반환함 (4) (좌동) (5) 투자자가 상기 (2)의 규정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납부금등으로 투 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 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 정참가회사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 매매계좌 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 의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납부금등 의 매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	--	--------------------------------	--

			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 상기 (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납부금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금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함 (6)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에 포함된 증권이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7) (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공동계좌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 납부금등의 매매가액 정산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
--	--	--	--

		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 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적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4) 상기 (1) 내지 (3)의 규정에-(생략)-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상기 (1) 내지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 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상기 (1) 내지 (7)의-(좌동)-규정에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9) 상기 (1) 내지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 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

		(8) 상기 (7)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9)상기 (7)의 -(생략)-응하여야 합니다. <추가>	(8) 상기 (7)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상기 (7)의 -(좌동)-응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수익자인 경우 환매자산 지급 방법 상기 (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에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한국거래소시장의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한 전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	--	---	---

		유도 - 수익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11) (생략) (12) 상기 (1) 내지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추가>	(10)~(11) (좌동) (12) 상기 (1) 내지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

		<추가> (이하 생략)	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좌동)
--	--	----------------------------------	--